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6. 김육영 의원 외 21인 (의안번호 387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의 장수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서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대상자 규정(안 제3조~제5조)

○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 명시(안 제6조, 제7조)

○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안 제8조, 제9조)

○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을 관리(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성북구의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노인 복지증진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 100세 도래 대상 어르신 인구 현황 ('24. 9월 현재)

사업년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구수 (나이)	66명 (100세 이상)	35명 (99세)	55명 (98세)	87명 (97세)	138명 (96세)	161명 (95세)
소요예산	50,500천원		27,500천원	43,500천원	69,000천원	80,500천원

※ 소요예산 산출은 '24. 9월 기준 인구수로 100세 도래시 1인 500,000원 산출하였으나 사망 등의 사유로 100세 도래 인구 감소 예상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장수축하물품 지급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장수어르신은 주민등록상 100세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장수 축하물품은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으로 규정

○ 안 제3조(지급대상)

-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을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규정함

○ 안 제4조(지급내용)

-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이하로 예산의 범위애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지급기준)

-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준일을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날로 하되, 전입 등의 사유시에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

○ 안 제6조(신청안내)~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말까지 안내문을 송부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규정과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안 제8조(지급 제외)~ 제9조(환수 조치)

- 장수축하물품 지급제외 대상과 환수 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부당 또는 불합리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부칙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특례)

-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안 제3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충족한 장수어르신들에게도 장수 축하용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00세이상인 사람을 "장수어르신"으로 정의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 와 내용이 적절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2]에 사회보장제도[3](복지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에 따라 '24. 11월 협의 완료[4] 통보되었기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 추진상 문제는 없음.

다만, 사업대상자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4개구(강북, 도봉, 중랑,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3)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 1."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조정과-5618(2024. 11. 7.) 서울 성북구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을 관리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지급신청은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특례)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

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①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②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비고 (연락처)
③ 신청내용					
④ 중복지원 여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 예(시군구:) □ 아니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성북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수임자 (위임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관 계	
	위임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지급대상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성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번호	지급대상자			신청일자	지급일자	축하물품 수령여부	축하물품 수령인	비 고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6. 김경이 의원 외 16인 (의안번호 388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이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체험홈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

❍ “장애인” 등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1호)

❍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규정 명시(안 제6조)

❍ 현행 운영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 수정(안 제16조 및 제17조)

❍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등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7.12.19.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반영하여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2조(정의), 정비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5]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6]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

5)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1.>

6)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정비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을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 안 제6조(실태조사) 신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 또는 서울시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제5조[7]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을 위해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1조[8]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9]에서는 장애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19조(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19조[10] 및 동법 제35조[11]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립생활 체험 홈"은 성북구에서 1개소 운영중으로 시설에서

---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8)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퇴소한 장애인 및 지역거주 장애인이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경험하며 자립생활 능력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전문적인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성북구 장애인 현황

(2024. 10월 기준)

연번	장애유형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계	16,916	5,871(34%)	11,045(66%)
1	지체	7,123	1,215	5,908
2	시각	1,846	378	1,468
3	청각	2,674	439	2,235
4	언어	161	87	74
5	지적	1,174	1,174	0
6	뇌병변	1,663	880	783
7	자폐성	339	339	0
8	정신	605	590	15
9	신장	874	639	235
10	심장	33	21	12
11	호흡기	88	75	13
12	간	128	2	126
13	안면	18	6	12
14	장루, 요루	144	11	133
15	뇌전증	46	15	31

※ 관내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이 66%로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 중증장애인(심한장애)에 국한되기보다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이에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대상 확대가 필요함.

붙임2 성북구 자립생활 체험홈 (1개소)

○ 사업목적 : 단기 자립체험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는 개인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함.

○ 운영기관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운영기간 : 2024. 1. ~ 2024. 12.

○ 소 재 지 : 노원구 공릉동 707 공릉2단지아파트 202동 10층(39.6㎡)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 입주정원 : 2명(기본 6개월, 최대 12개월)

○ 입주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 주요프로그램 : 자아인식, 일상생활관리, 지역주민과의 교류, 직업탐색 자립생활 코디네이터에 의한 전문적 사회적응훈련

○ 사업예산 : 54,903천원(전액 구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8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체험홈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

나. “장애인” 등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1호)

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규정 명시(안 제6조)

라. 현행 운영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 수정(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7.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6.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7.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8.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센터설치 및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전문가
2.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여성 장애인
5.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6. 장애인 관련 공무원 등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지원인력) ①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활동법 제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및 지역거주 장애인, 보호자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2월 13일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6. 소형준 의원 외 7인 (의안번호 389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행되어, 중단되었던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을 셋째 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10조)

2)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정비(안 제21조제1항·제2항)

3) 출산축하금 지원금 지급 기한 조정(안 제23조제5항)

4) 홍보물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5조제3항·제4항 신설)

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 신설)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2)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11. 8. ~ 2024. 11. 12.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 요

○ 본 개정안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 이용권 사업'이 시행되어 중단되었던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셋째 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초 저출산 시대(합계출산율 2023년 전국 0.72명, 서울시 0.55명, 성북구 0.59명)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연도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2021년~2023년)>

(단위:명)

구분	연도	출생아수 (증감률)	합계출산율 (증감률)	비고
성북구	2021	1,939 (-5.0%)	0.656 (-3.0%)	서울시 자치구 9위
	2022	1,896 (-2.2%)	0.649 (-1.1%)	서울시 자치구 7위
	2023	1,695 (-10.6%)	0.588 (-9.4%)	서울시 자치구 7위
서울시	2021	45,531 (-4.0%)	0.626 (-2.5%)	
	2022	42,602 (-6.4%)	0.593 (-5.3%)	
	2023	39,456 (-7.4%)	0.552 (-6.9%)	
전국	2021	260,562 (-4.3%)	0.808 (-3.5%)	
	2022	249,186 (-4.4%)	0.778 (-3.7%)	
	2023	230,028 (-7.8%)	0.721 (-7.3%)	

출처 : 통계청

<성북구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2021년~2023년)>

(단위:명)

구 분		2021	2022	2023
성북구	출생아수	1,939	1,896	1,695
	첫째아	1,144 (-5.9%)	1,270 (+11%)	1,066 (-16%)
	둘째아	675 (-4.3%)	534 (-20.9%)	517 (-4%)
	셋째아 이상	120 (+0.8%)	92 (-23.3%)	112 (+22%)

❍ 2023년 첫째아는 전년보다 16% 감소, 둘째아는 전년보다 4% 감소, 셋째아 이상은 전년보다 22% 증가

나. 주요내용

○ **안 제10조(구성)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 추가**

현행 조례상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부서장 및 교육·일자리·주거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되어 있으나 **'위탁사무 센터장'을 추가**함.

'위탁사무 센터장'은 대상자가 불명확하고, 현행 조례상 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6명이 당연직으로 있어 당연직 비율이 큼. 위원회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당연직 추가는 검토가 필요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으로** ----------.

○ 안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 정비

①항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2년 국가 보조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대상자 중복지원으로 중단되었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재지원하려는 것임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지원금은 삭제하고,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15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셋째이상 다자녀 출생시 차등하여 지원하고자 규정을 마련함

②항 출생자녀의 순서에서 신생아의 출생당시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하지 않음"에서 "산입"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 보조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기준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 자치구별 출산축하금 지원구 8개구, 첫째부터 지원 4개구,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4개구임

※ 자치구비 평균지원금 : 셋째아 178만원(최소 60만원, 최대 300만원)
넷째아 325만원(최소100만원,최대500만원)
다섯째이상 462만원(최소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
1. 첫째 자녀 20만원	<삭 제>
2. 둘째 자녀 40만원	<삭 제>
3. 셋째 자녀 80만원	3. -------- 100만원

4. 넷째 자녀 100만원	4. ------- **15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150만원	5. ---------- **200만원**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생아의 출생 당시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하지 않음**	3. ---------- **산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제25조(교육 및 홍보)제③항·④항 인식개선 등 홍보물품 지급 규정 신설**

기존 제25조제①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홍보물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② (생 략)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출산가정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 **안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다자녀 저소득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자녀 저소득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양육 부담이 크며, 이를 지원하는 조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명시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에 부합 하므로, 본 조항의 신설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가정에(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1: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 중이나 본인 부담액이 시간당 1,163원~5,306원 유형별로 차등발생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자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으며, 개정안의 목적과 필요성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10조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으로 '위탁사무 센터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당연직 위원 추가 안은 검토가 필요함

○ 출산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칙을 신설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부칙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10조제3항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위탁사무 센터장'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출산축하금 지원 규정의 신설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10조제3항 중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 " 를 "부서장" 으로 수정.

○ "부칙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89

제안연월일: 2024년 11월 21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0조제3항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위탁사무 센터장'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출산축하금 지원 규정의 신설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3항 중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 " 를 "부서장" 으로 수정

○ 부칙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장,위탁사무 센터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으로 ----------. <신 설>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서장으로----------. 부 칙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아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이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구청장은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
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
4. 임신·출산·결혼·보건·교육 지원 정책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제17조(지원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시설의 기능)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시설 세부사업의 수립 및 시행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연구・보고

3. 저출산 극복 교육 및 전문가 활동 지원

4.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출산장려사업

제20조(성북구 출산장려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한다.

1. 출산축하금 지원

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3.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4.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셋째 자녀 100만원

4. 넷째 자녀 15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200만원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3. 신생아의 출생 당시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4.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제22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 순위

2.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및 영아와의 관계

3.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월 접수 분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출산축하금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출산가정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①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자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20만원 2. 둘째 자녀 40만원 3. 셋째 자녀 80만원 4. 넷째 자녀 10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150만원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2. (생 략) 3. 신생아의 출생 당시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하지 않음 4. (생 략)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 <삭 제> <삭 제> 3. ------- 100만원 4. ------- 150만원 5. ---------- 200만원 ② ----------. 1.·2. (현행과 같음) 3. ---------- 산입 4. (현행과 같음)
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 ①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일----------.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② (생략)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출산가정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자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신 설>	부 칙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6. 경수현 의원 외 21인 (의안번호 390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또한 노후화된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대상 개정(안 제6조)

❍ 센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신설(안 제10조)

❍ 오타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10조~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여 아동복지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 (2024.10.31.현재)

○ 시설현황

구 분	계	구립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단체	개인
시설수	23	3	8	6	3	3

○ 이용아동 : 현원 724명 (미취학 4명, 초등 529명, 중등 126명, 고등 65명)

○ 종사자수 : 77명

○ 운영내용 : 방과후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프로그램

○ 2024예산 : 4,788,710천원(국 1,005,277 시 2,313,331 구 1,470,102)

나. 주요내용

○ 안 제6조(이용의 대상)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12]에 따른 시설인

12)「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서인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지역사회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를 우선돌봄대상자로 명시하여 규정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이용의 대상) (현행과 같음) ----------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안 제7조(비용의 지원)**는 센터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항으로 제목을 "**사업비의 지원**"에서 "**비용의 지원**"으로 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7호에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7조(비용의 지원) ----------. 1. ~ 6. (현행과 같음) 7.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8. (현행 제7호와 같음)

○ **안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 · 구성 등)**는 기존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의 인원 수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 구성 등) ①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1. 센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4. 센터 사업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 · 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 7. (생 략)	③ ----------. 1. ---------- 1명 2.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 구립 3개소(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주소	운영주체
1	길음동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길음1동	서경로6길 70	정인교회
2	석관동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석관동	한천로79길 14-14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3	종암동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종암동	종암로19길 18	종암 중앙교회

○ 민간 20개소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주소	운영주체
1	마가렛지역아동센터	성북동	성북로23길 22-13	재단법인 천주교사랑의씨튼수녀회
2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성북동	성북로10길 6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	꿈터지역아동센터	삼선동	삼선교로 54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유지재단
4	동소문행복한홈스쿨	동선동	아리랑로7길 11	행복한아이 사회적협동조합
5	삼성지역아동센터	돈암1동	동소문로34길 24 304호, 305호	삼성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6	월곡지역아동센터	돈암1동	정릉로52길 22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
7	큰나무학교지역아동센터	안암동	보문로30가길 41-6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
8	꿈나래지역아동센터	정릉1동	정릉로 282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교회
9	사랑지역아동센터	정릉3동	솔샘로 25	사랑비전스쿨 사회적협동조합
10	성모의집지역아동센터	정릉4동	보국문로38길 25-2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11	성광지역아동센터	정릉4동	보국문로16길 87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12	시습지역아동센터	정릉4동	보국문로16가길 43-13	사회적협동조합 호학시인
13	아낌없이주는나무 지역아동센터	종암동	월곡로5길 39	개인
14	목자지역아동센터	월곡1동	종암로36길 53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자교회
15	밤골아이네지역아동센터	월곡1동	화랑로1길 26-3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성혈흠숭수녀회
16	장위희망지역아동센터	장위1동	장위로15길 48	장위희망사회적협동조합
17	다솔지역아동센터	장위1동	장월로 89-10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18	비전트리지역아동센터	장위2동	장월로 28	비전트리 사회적협동조합
19	장위지역아동센터 밀알학교	장위2동	돌곶이로 157 4층	개인
20	푸른하늘지역아동센터	석관동	화랑로38길21	개인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0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또한 노후화된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 대상을 개정함 (안 제6조)

나. 센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신설함(안 제10조)

라. 오타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아동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책임)”을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제1항 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한다.

1. 센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4. 센터 사업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제3항 중 “인정한”을 “인정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기관·민간단체”를 “관계 기관·민간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7조(비용의 지원) ----------. 1. ~ 6. (현행과 같음) 7.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1. 센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신 설>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신 설>	4. 센터 사업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신 설>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 ----------.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1. ---------- 1명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 인정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관계기관·민간단체----------.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2조(위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54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맞춤 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단 설립목적 적용범위, 재단의 사업 (안 제1조~제4조)

○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정관, 임원, 이사회 구성 (안 5조~제9조)

○ 사업위탁, 사업계획서,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 (안 제13조~ 제1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예산조치 : 소요예산 14,007,391천원 (2025년~2029년 / 5개년)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9. 19.(목) ~ 10.10.(목)(21일간)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설립)**

-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용범위, 민법」제32조[13]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명시

○ **안 제4조(재단의 사업)**

-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복지시설 간 교류・협력 지원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13)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사업
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8.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9.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6조(정관)

-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북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 안 제7조(임원)

-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도록 함.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규정함.

○ 안 제8조(임원의 직무) 및 제9조(이사회), 제10조(직원)

-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함. 재단의 사업수행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출연금 등의 교부) 및 제12조(수익사업)

-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 안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와 그 소속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안 제16조(사업계획서·결산서 등의 제출)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안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및 제19조(공무원의 파견)

- 구청장은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8조(지도감독)

- 구청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재단 운영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고,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성북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성북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추진하며 추진 근거 법률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상위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성북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24. 8.28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재단 설립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적합한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 또한 타당성 검토시 성북복지재단 설립 관련 성북구민 의견조사 결과 설립 필요성에 대해 '24. 5~6월중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시 64%가 긍정 답변을 하였고 복지서비스 통합관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과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복지관련 업무 및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한다고 응답함. '24. 8월 주민의견 공청회에서도 전문가와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재단법인 설립·운영 계획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북 복지재단 추진경과〉

○ 설립 사전 협의안 방침 수립 ····· '23.6.29
○ 재단설립 추진계획안 방침 수립 ····· '23.8.9
○ 복지관련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 '23.6월 ~ '24.6월
○ 서울시 설립 협의(1차)결과 회신 ····· '23.8.28
○ 설립 타당성 검토(서울연구원) ····· '23.12.28 ~ '24.8.28
- 검토 결과 ⇒ 타당성 있음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구 홈페이지) ····· '24.8.13 ~ 8.28
- 결과 공개 ⇒ 의견 없음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 '24.8.28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구 운영심의위원회) ····· '24.9.10

붙임 1 성북구 사회복지 여건과 현황

☐ 성북구 장래인구 추계(2040년)

(단위:명,건,천원)

구분	총인구	20세 미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수	369,977 (100%)	38,520 (10.4%)	139,922 (37.8%)	73,932 (20.0%)	117,603 (31.8%)

<출처>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 복지 수요자 증가 : 사회적 고립, 복지 사각지대 증가

○ '23년 11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9년 대비 30.2% 증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1월)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총수급자	10,058	13,719	11,324	15,634	12,364	16,740	12,797	17,220	13,367	17,861
자활사업 참여자	13,368		15,293		16,385		15,861		17,513	

<자료> 사회보장통계정보(2023년)

○ '20년부터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만50세 이상 중장년은 평균 1,216명으로, '20~'21년 대비 '22~'23년 기간동안 돌봄 복지 대상자 48.3% 증가

<고령자 돌봄 수요(2020.8~2023.9)>

(단위:명,건,천원)

구분	2020.8~12		2021.1~12.		2022.1~12.		2023.1~9	
	인원	연계건수	인원	연계건수	인원	연계건수	인원	연계건수
지원실적	480	462	1,480	1,883	1,640	2,241	1,265	1,321
비용지급	160,515		537,950		737,250		392,320	

*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 사회복지 시설과 이용자의 증가

○ '19년~'23년(8월)도 성북구 사회복지시설은 146개소 ⇢ 192개소(45개, 30.8% 증가), 정원은 4,839명 ⇢ 5,270명(431명, 8.9% 증가)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이며 자치구 중 15번째로 많음

○ 인구 천명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42명으로 서울시 전체 분포와 비슷한 수준

<성북구 사회복지시설(법정 시설 및 기관)>

(단위:개소,명)

연도	인구수	시설수*(인구 천명당 비율)	입소자수	정원수
2019	442,650	146(33.0%)	1,451	4,839
2020	438,051	156(35.6%)	1,477	5,023
2021	437,153	172(39.4%)	1,637	5,364
2022	430,397	189(44.0%)	1,681	5,385
2023.11	**425,647**	**192(44.8%)**	**1,878**	**5,270**

* 시설 : 기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의 총계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설치 현황>

구분	사회복지시설 수	비율(%)	순위	개소/천명
서울시 전체	4,913	100	-	0.54
자치구	4,892	96.1	-	0.52
성북구	**192**	**3.9**	**15**	**0.45**

<기초생활 수급권자 현황>

구분	가구	인원(명)	수급자/천명	인구 천명당 수급자 순위
서울시 전체	424,818	320,133	45	-
성북구	**13,342**	**17,839**	**42**	**13**

<출처> 사회보장통계정보(2023.11월)

붙임 2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12.12 일부개정]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 3. 14.]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보건복지부령 제770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8.> [전문개정 2011. 9. 1.]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9. 1.]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20. 12. 28.>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문개정 2011. 9. 1.]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1. 9.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354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맞춤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설립목적 적용범위, 재단의 사업 (안 제1조~제4조)

나.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정관, 임원, 이사회 구성 (안 5조~제9조)

다. 사업위탁, 사업계획서,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 (안 제13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14,007,391천원 (2025년~2029년 / 5개년)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9. 19.(목) ~ 10.10.(목)(21일간)

- 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 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입법예고 중 실시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성북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복지시설 간 교류·협력 지원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사업

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8.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9.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등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 재단 최초의 임원 선출은 구가 공개모집을 수행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55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복지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재산 지원 필요

❍ 성북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복지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역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상승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필요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 설립일자 : 2025. 4. 예정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성북구 정릉로48길 35
- 조직구성 : 이사회, 감사, 사무국(1국 3팀)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기본재산, 보통재산(인건비 및 운영비)출연

○ 출 연 금 : **총 2,739,377천원**

- 기본재산 : 2,000,000천원
  - · 설립시 1회 출연 (법인 설립 허가 요건)
- 보통재산 : 739,377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 계
금액	571,780	148,097	19,500	739,377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재정지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출연동의안은 성북복지재단의 안정적인 기반마련과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4]에 따라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것임

나.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은 성북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2025. 4월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5]**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14)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025년도 출연금은 27억 3,937만원으로 성북복지재단 기본재산 20억원과 보통재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항목에 7억 3,937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본재산은 1회 출연**('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통 기준[16] 20억원')으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보통재산은** '25. 4~12월, 9개월분의 성북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1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산정하여 출연할 예정임.

  * 인건비 571,780천원(총14명 9개월분), 운영비 148,097천원, 사업비 19,500천원

※ 서울시 타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구분	설립년도	출연금	구분	설립년도	출연금
마포복지재단	2021년	20억 원	노원복지재단	2011년	11년 15억원 12년 5억원
광진복지재단	2019년	19년 20억 원, 20~22년 10억 원	구로희망복지재단	2009년	20억
용산복지재단	2016년	20억 원	강서복지재단	2012년	20억
양천사랑복지재단	2005년	20억 원	동작복지재단	2004년	20억
종로복지재단	2024년	20억원	강남복지재단	2014년	20억

- 서울시에 설립된 타 복지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기본 20억으로 최고 30억원

다.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16)「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통기준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출연기준액 확정·시행 계획」(2016.12.1.시행) 사회복지법인 20억원 이상, **재단법인 20억원 이상**, 사단법인 없음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동의는 출연 대상기관인 성북복지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 안 번 호	355

제출년월 : 2024.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필요성

○ 성북복지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재산 지원 필요

○ 성북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복지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역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상승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필요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출연기관

○ 출연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25. 4. 예정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성북구 정릉로48길 35
- 조직구성 : 이사회, 감사, 사무국(1국 3팀)

○ 주요사업

-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현 : 주민복지 아카데미,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 지역상생 기부나눔문화 활성화 : 성북형 사회복지 민간기금 조성 등
- 지역복지 인프라 개선 : 소규모 복지시설 기능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등
- 자원봉사활성화 :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 등

3. 출연금 산출내역

○ 출연금 현황 : **총 2,739,377천원**

- 기본재산 : 2,000,000천원
  - · 설립시 1회 출연 (법인 설립 허가 요건)
- 보통재산 : 739,377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
금액	571,780	148,097	19,500	**739,377**

4. 기대효과

○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 서비스 개발 · 전문성 향상 기대

○ 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인프라 개선, 복지서비스 질 향상

○ 민간자원 규모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56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2025.4.15.)에 따라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 고(현(現) 위탁현황)
장위종합 사회복지관	화랑로 237, 2층(본관)	257.77	2020.4.16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위탁기간 2020.4.16 ~ 2025.4.15)
	화랑로33가길 34, 101호(별관)	56.58		

❍ 위탁기간 : 2025. 4. 16. ~ 2030. 4. 15. (5년)

❍ 위탁사무의 범위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2025년 4월 15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위탁 대상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간이 2025. 4.15자로 만료되기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제5조[17]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19] 및「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5년간 위탁할 수 있음.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운영은 적정해 보임.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18)「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9)「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7.(생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

제출년월 : 2024.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필요성

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2025.4.15.)에 따라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함

나.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 고(현(現) 위탁현황)
장위종합 사회복지관	화랑로 237, 2층(본관)	95.96	2020.4.16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위탁기간 2020.4.16 ~ 2025.4.15)
	화랑로33가길 34, 101호(별관)	52		

나. 위탁기간 : 2025. 4. 16. ~ 2030. 4. 15. (5년)

다. 위탁사무의 범위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사회복지관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사업의 연속성,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을 준수

4. 향후계획

○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 2024. 11 ~ 12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5. 1. ~ 2.

○ 협약체결 : 2025. 4.

5. 참고사항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 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57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년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재위탁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다솔어린이집 (남수연)	삼양로2길55 (길음제2동)	사회복지법인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강순옥)	57/42	2020.06.01.~ 2025.05.31.
2	길음빛어린이집 (양희선)	길음로92 (길음제1동)	개 인 (양희선)	72/64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3	아이누리어린이집 (김영실)	숭인로16 (길음제2동)	개 인 (김영실)	20/20	2020.07.01.~ 2025.06.30.
4	꿈빛어린이집 (정혜연)	종암로21길127 (종암동)	개 인 (정혜연)	19/19	2020.09.01.~ 2025.08.31.
5	대림어린이집 (최은정)	길음로118 (길음제1동)	길음뉴타운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강철)	28/28	
6	즐거운어린이집 (문은순)	정릉로305 (정릉제1동)	개 인 (문은순)	20/20	
7	한사랑어린이집 (박선자)	솔샘로25길28 (정릉제4동)	개 인 (박선자)	20/20	

-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 수탁기관 선정 : 2025년 제1차,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위탁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19p

나. 주요내용

○ **재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7개소**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5. 5.31~8.31자로 만료되기에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영유아보육법」제24조[20]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제1항[21]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7항[22] 및「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제14조제1항[23]에서는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위탁 기간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24],「보육 조례」제14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민간위탁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년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다솔 어린이집 (남수연)	삼양로2길55 (길음제2동)	사회복지법인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 (강순옥)	57/42	2020.06.01. ~ 2025.05.31.
2	길음빛 어린이집 (양희선)	길음로92 (길음제1동)	개 인 (양희선)	72/64	
3	아이누리 어린이집 (김영실)	숭인로16 (길음제2동)	개 인 (김영실)	20/20	2020.07.01. ~ 2025.06.30.
4	꿈빛 어린이집 (정혜연)	종암로21길127 (종암동)	개 인 (정혜연)	19/19	2020.09.01. ~ 2025.08.31.
5	대림 어린이집 (최은정)	길음로118 (길음제1동)	길음뉴타운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강철)	28/28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6	즐거운 어린이집 (문은순)	정릉로305 (정릉제1동)	개 인 (문은순)	20/20	
7	한사랑 어린이집 (박선자)	솔샘로25길28 (정릉제4동)	개 인 (박선자)	20/20	

1)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2) 수탁기관 선정 : 2025년 제1차,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나. 위탁 사업의 범위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58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2022. 9. 7. 개관 후 2년간 성북구 직영 여성직업능력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온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를 직업 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취·창업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 위　치 : 성북구 회기로3길 17
- 규　모 : 지하1층~지상1층 827.75㎡

(강의실, 요리교실, 컴퓨터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관리·운영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 관리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2022.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성북구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 개관하여 직영으로 운영한 시설로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 교육프로그램 수강 및 자격증 취득 후 취·창업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역량이 현장에서 요구됨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시설 및 사업개요 >

○ 시설현황

구 분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위 치	성북구 회기로 3길 17(종암동)		
면 적	827.75㎡(약 250평)		1,170.09㎡(2~4층/옥상)
	329.68㎡(지하1층)	498.07㎡(지상1층)	
공간구성	강의실 2개, 서재, 휴게실	요리교실, 컴퓨터실, 사무실, 라운지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 운영방식 : 직영, 현장인력 2명(프로그램운영, 홍보전담 기간제근로자)

○ 운영실적 (2024.10..31.현재)

구 분	합계	특강시리즈	정기강좌 자격증/취업&창업/조리	협약기관 프로그램 (정릉새일센터)
프로그램 수(개)	55	4	47	4
참여자 수(명)	956	148	522	286
자격증 취득(명)	236	0	218	18
취업(명)	97	0	23	74

○ 2024 예산 : 226,057천원(전액 구비)

나. 주요내용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제9조제1항[25]에 **"구청장은 필요**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관리시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 시설의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어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어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26]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북구 여성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전문성이 필요하여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위탁 기간**은「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2항[27]에 따라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같은 조례 제 7조제1항 및 제2항[28]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적격심사를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
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 안 번 호	358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22.9.7. 개관 후 2년간 성북구 직영 여성직업능력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온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를 직업 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취·창업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기여하기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 위　치 : 성북구 회기로3길 17

○ 규　모 : 지하1층~지상1층 827.75㎡

(강의실, 요리교실, 컴퓨터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관리·운영

○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 관리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관리시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59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별표1의 성북구 청소년시설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등 관련 조항 수정(안 제8조제2항제6호)

1) ‘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으로 수정

○ 별표 1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시설명 및 위치 변경(안 별표1)

1) 현행 별표에서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삭제

2) 청소년 놀터 위치를 ‘보문로29길 49 외 7’에서 ‘보문로29길 49 외 4’로 변경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9. 19. ~ 2024. 10. 10.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 조항을 서울시 관련 조례에 맞추어 정비하고 청소년 시설 목록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8조제2항 제6호**는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기재된 자녀 수가 3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고

○ 기존 조례 제8조제1항(사용료 등)에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u>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u>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u>성북구에 주소를 둔</u> ----------

○ **별표 1의 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시설 목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2020.11 폐지한 시설 "성북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청소년 놀터 시설 감소를 반영하여 수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table>
<tr><th>시설명</th><th>기능</th><th>위치</th></tr>
<tr><td>성북
청소년문화
공유센터</td><td>、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및 활동 지원
、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활동 공간 운영</td><td>동소문로26
다길 8-2</td></tr>
<tr><td>청소년
놀터</td><td>、 청소년들의 "놀이" 및 "쉼" 중심의 문화 · 여가 활동 공간 운영
、 청소년 자치 및 소모임 활동 지원</td><td><u>보문로29길
49 외7</u></td></tr>
</table></td><td>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table>
<tr><th>시설명</th><th>기능</th><th>위치</th></tr>
<tr><td>(삭제)</td><td>(삭제)</td><td>(삭제)</td></tr>
<tr><td>청소년
놀터</td><td>(현행과 같음)</td><td><u>보문로29길
49 외4</u></td></tr>
</table></td></tr>
</table>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관련 사용료 감면을 정비하고 시설 현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용료 감면대상이 **3인이상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성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기존 수혜자의 민원 발생이 있을 수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9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별표1의 성북구 청소년시설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등 관련 조항 수정(안 제8조제2항제6호)

1) ‘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으로 수정

나. 별표 1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시설명 및 위치 변경(안 별표1)

1) 현행 별표에서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삭제

2) 청소년 놀터 위치를 ‘보문로29길 49 외 7’에서 ‘보문로29길 49 외 4’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법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을 “성북구에 주소를 둔”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제4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월곡 청소년센터	·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운영	화랑로13가길 110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운영	솔샘로 107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	·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운영	장월로 89-6
청소년 놀터	· 청소년들의 “놀이” 및 “쉼” 중심의 문화 · 여가 활동 공간 운영 · 청소년 자치 및 소모임 활동 지원	보문로29길 49 외 4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7. (생 략)
③ (생 략)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시설(제4조 관련)

<table>
<tr><th>시설명</th><th>기능</th><th>위치</th></tr>
<tr><td>성북 청소년문화 공유센터</td><td>·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및 활동 지원
·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활동 공간 운영</td><td>동소문로26 다길 8-2</td></tr>
<tr><td>청소년 놀터</td><td>· 청소년들의 “놀이” 및 “쉼” 중심의 문화 · 여가 활동 공간 운영
· 청소년 자치 및 소모임 활동 지원</td><td>보문로29길 49 외7</td></tr>
</table>
</td><td>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성북구에 주소를 둔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시설(제4조 관련)

<table>
<tr><th>시설명</th><th>기능</th><th>위치</th></tr>
<tr><td>청소년 놀터</td><td>· 청소년들의 “놀이” 및 “쉼” 중심의 문화 · 여가 활동 공간 운영
· 청소년 자치 및 소모임 활동 지원</td><td>보문로29길 49 외4</td></tr>
</table>
</td></tr>
</table>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60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자립·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5.02.28.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1)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정릉동 966-1), 4층

○ 규　　모 : 연면적 235.38㎡ (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18길 3-9

○ 규　　모 : 연면적 333.89㎡ (지상1층/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활동사업 운영

3)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다길 8-2(동선동3가 130-3)

○ 규　　모 : 연면적 283.86㎡ (지하1층/지상3층)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의결

❍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위탁법인	위탁기간	종사자수	소요예산 ('24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 (대표 : 정성현)	2025.3.1. ~ 2028.2.28. (3년)	11명	712,215천원 (국 103,386천원, 시 220,540천원, 구 388,289천원)
석관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5명	181,099천원 (국 66,711천원, 시 66,711천원, 구 47,677천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7명	397,580천원 (국 154,716천원, 시 154,716천원, 구 88,148천원)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재계약 대상 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5. 2.28자로 만료되기에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는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29]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4조 제1항[30]에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 3개소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9)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30)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 위탁 기간은 해당 조례에서「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31]에 따라 3년으로 추진하기에 적법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 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60

제출년월일 : 2024.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자립·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5.02.28.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1)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정릉동 966-1), 4층

○ 규 모 : 연면적 235.38㎡(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18길 3-9

○ 규 모 : 연면적 333.89㎡(지상1층/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활동사업 운영

3)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다길 8-2(동선동3가 130-3)

○ 규 모 : 연면적 283.86㎡ (지하1층/지상3층)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라.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의결

바. 기존 위탁현황 위탁 현황

시설명	위탁법인	위탁기간	종사자수	소요예산 ('24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 (대표 : 정성현)	2025.3.1. ~ 2028.2.28	11명	712,215천원 (국 103,386천원, 시 220,540천원, 구 388,289천원)
석관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5명	181,099천원 (국 66,711천원, 시 66,711천원, 구 47,677천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7명	397,580천원 (국 154,716천원, 시 154,716천원, 구 88,148천원)

3.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6. 소형준 의원 외 12인 (의안번호 386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 장애, 정신적·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가족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32]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이상 39세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

※ 청소년기본법(청소년) <u>9세이상</u>~24세이하, 청년기본법(청년) 19세이상~34세이하, 성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청년) 19세~<u>39세이하</u>

32) 「민법」제779조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 3. 31.]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6조(실태조사 등)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업무의 위탁)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주거,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직업훈련 및 취업, 의료 등 맞춤형 지원사업 과 해당 분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홍보 및 교육)

-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청소년기본법』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육성 및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33]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33)「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 1호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 보건복지부 2023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본 안건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참 고 》

○ 보건복지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로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생계 · 의료 · 휴식 지원 · 문화·여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돌봄 부담이 높을수록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발굴 강화, 상담·안내 활성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강조.

○ 지자체에 청년복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이 복지제도에 대해 원스톱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힘.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참고 관련 법규

○ 『청소년기본법』[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6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정신적·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가족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

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